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등 근거 추가〉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등 근거 추가 (안 별표 제76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20.

다.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등 근거 추가 (안 별표 제76호)

현 행	개 정 안
○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별표 제76호)	○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안 별표 제76호)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과 양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강선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의안번호_2204140)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방기술품질기술원에 대하여 장기 사용허가등의 특례를 추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이미 국유재산의 장기사용허가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달리 국방품질기술원의 경우 장기사용허가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장기적인 시험이나 품질 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³⁾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으로서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연구와 국내 방산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방위산업의 경우 각종 품질 검사나 시험을 위한 대규모의 시험장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고 군수품 품질 검사 등의 연속성과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사용허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 사용허가 특례 마련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장기 사용허가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지원수단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이 5년 이상의 장기 사용허가⁴⁾나 장기 대부

4)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계약⁵⁾을 맺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양여의 경우 소유권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이전되지만 장기 사용허가의 경우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보유하게 됨. 양여에 더하여 장기 사용허가등을 특례로 추가할 경우 사안에 따라 양여보다 장기 사용허가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장기 사용허가등을 특례로 규정하는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셋째,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장기 사용허가의 대상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법률에 명시⁶⁾되어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성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6)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⑤ (생략)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넷째,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⁷⁾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소관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4140)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04140호)

제35조의2(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방과학분야 특성상 시험 및 연구활동을 위한 시설규모가 큰 점, 장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사용허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필요성이 인정되며, 방위사업법 기존 특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29년 임을 고려할 때, 신설되는 장기사용허가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도 적정하다는 입장임.

7)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개정안			
별표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문의처

02)6788-5150